

IV.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기타 안내 사항

참여학생의 근무 및 학업상황 변동에 따른 처리기준

구 분	내 용	1)입학취소 또는 제적	2)학위 취 소	3)교육 지 원금 환수	4)교육 지 원금 지
부적격 입학	①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	○	○	○	X
퇴 직	②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내에 폐업, 도산, 구조조정,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* 참여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	X	X	X	X
	③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내에 임금체불, 계속되는 휴업, 사업장 이전,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기업에서 자진 퇴사한 경우 * 참여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	X	X	X	X
	④ 재학 중 참여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경우	○	-	○	X
	⑤ 졸업 후 최소의무 기간 내에 참여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경우	X	X	○	-
	⑥ 재학 중 본인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	○	-	○	X
	⑦ 졸업 후 최소의무 기간 내에 본인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	X	X	○	-
	⑧ 학위과정 도중에 본인의 원에 의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	○	-	○	X
자 퇴	⑨ 학위과정 도중에 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(②,③사유포함)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	X	X	X	X
학업태 도	⑩ 정당한 사유 없이 학과수업에 무단 불참하거나 성적 불량 등 매우 불성실한 학업태도를 보이는 경우	○	-	○	X
	⑪ 휴학 중인 자가 정해진 기한 내 복학하지 않은 경우	○	-	○	X
	⑫ 참여기업 또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	○	-	○	X
자격 요건 변동	⑬ 재학 중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된 경우	X	-	X	X
	⑭ 재학 중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이 된 경우	X	-	X	X
	⑮ 재학 중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견기업이 된 경우	X	-	X	○

※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주관대학과 관리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

- ① 위 처리기준 중 ①의 경우, 부적격 입학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해야 함
- ② 위 처리기준 중 ②·③ 재학생의 경우,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거나, 2분의 1 미만을 취득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(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)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* ②의 학생신분 유지의 경우, 타 기업에 취업하여 3자 계약을 체결하면, 체결 후 시작되는 학기부터 교육지원금 지원 가능

- 1) 입학취소 : 입학이 취소되며, 향후 계약학과에 재입학 불가
- 2) 학위취소 : 입학생이 졸업 시에 취득한 학위를 취소
- 3) 교육지원금환수 : 현재까지 지원된 등록금에 대한 교육지원금 전액 환수
- 4) 교육지원금지원 : 위 ①~⑮ 상황발생 후에 등록금에 대한 교육지원금 지원여부